



의안번호	제 2013 - 5 호
보 고 연 월 일	2013. 3. 25. (제4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65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회의 요지	1
II. 제66차 전체 회의	8
1. 일시 · 장소	8
2. 참석자	8
3. 주요 안건	8
4. 회의 요지	8
III. 향후 일정	14

<별첨자료>

최승원,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주용완, 조석영, “살인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련”

함석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주용완, 조석영,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 관련”

김혜정,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에 대한 의견(2013.03.04.)”

최승원,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II)”

주용완, 조석영,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함석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주용완, 조석영, “성범죄 수정 시안에 대한 검토 보고”



주용완, 조석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김혜정,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2013.03.18.)”

함석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2013.03.25.)



I. 제6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3. 4.(월) 16:00 ~ 19: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범현, 이주원, 이종교, 이진국,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4. 회의 요지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논의 결과

(1) 권고 형량범위

- 현재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특히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은 성범죄, 뇌물, 사기, 증권·금융범죄 등 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 일선 법원에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하는 상한이탈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는 점,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높아진 이후의 실무 관행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범죄 양형기준 상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견해가 나뉨

(가) 다수의견

- 아래의 ‘현행기준’을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자는 의견

<현행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수정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u>6년</u>	<u>5년</u> - <u>8년</u>	<u>6년</u> - <u>10년</u>
2	보통 동기 살인	<u>7년</u> - <u>12년</u>	<u>11년</u> - <u>16년</u>	<u>15년 이상, 무기 이상</u>
3	비난 동기 살인	<u>11년</u> - <u>16년</u>	<u>15년</u> - <u>20년</u>	<u>18년 이상, 무기 이상</u>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u>17년</u> - <u>22년</u>	<u>20년 이상, 무기</u>	<u>25년 이상, 무기 이상</u>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u>20년</u> - 23년	<u>22년 이상, 무기</u>	<u>무기 이상</u>

(나) 제1소수의견

- 제1 내지 제4유형의 형량범위 상향에는 동의하나, 제5유형의 감경 영역 상한을 25년으로, 기본영역 상한을 23년 또는 24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임

(다) 제2소수의견

- 다수의견과 같이 형량범위를 상향시키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 우려됨
- 따라서,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해야 함

(2) ‘유형의 정의’ 부분

(가) 제1유형

- 현재, 제1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의 예시로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장기간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자기 또는 친족이 살

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등)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편, ①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②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제1유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 일치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제1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의 예시로 추가하되, 구체적인 표현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나) 제4유형

- 2012. 12. 18.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시행 예정) 제10조 제1항은 ‘강간 등 살인’죄를 신설하여 “제7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강간살인, 강도살인, 인질살해,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등의 경우에 준하여 위 범죄를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3)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기준 수정

- 현재, 살인미수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량범위표를 만들지 아니하고 서술식 기준으로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때, 권고영역에 “무기” 또는 “무기 이상”이 포함된 경우 서술식 기준의 적용에 따라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어떻게 될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위 서술식 기준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술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4) 양형인자

(가) ‘중한 상해’의 수정

- 살인미수범죄 전체 중 위 인자가 적용된 사건의 비율이 43.4%(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선고된 사건 전체 1,078건 중 468건)에 이르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례에서 기본영역이 아닌 가중영역이 출발점이 되는 문제가 발생
- 이에, 위 인자의 수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의견	내용
원안 찬성 (함석천, 최진녕, 이주원, 이진국, 최승원)	○ 별로 중하지 않은 상해에 대하여도 4주 내지 5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한 상해’라는 인자가 적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음 ○ 따라서, ‘중상해’의 정도에 이른 경우만 가중처벌함이 타당
원안 일부 수정 (범현)	○ 현재의 양형인자 정의 중에서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라는 부분만 삭제
원안 일부 수정 (이종교, 김혜정)	○ ‘중한 상해’를 ‘중상해’로 변경할 경우 적용 사례가 너무 적어지므로, ‘4주~5주’를 ‘7주~8주’로 변경함이 타당
원안 반대, 현행 유지 (주용완, 조석영)	○ ‘중상해’가 인정되는 사안은 거의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함이 타당

(5) 집행유예 기준(살인미수범죄)

- ‘잔혹한 범행수법’은 현재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요소는 특별가중인자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나 계획성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임
- 따라서, ‘잔혹한 범행수법’을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논의 결과

(1) 권고 형량범위

(가) 강도강간, 특수강도 강제추행

(a) 현행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b) 양형기준 수정안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형기준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6년 - 10년	7년 - 10년 9년 - 13년	9년 - 13년 12년 - 17년

- 강도강간죄나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고,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 있음
- 3년간 양형기준 시행 성과 분석 결과 강도강간의 평균형량이 약 10년에 달하고,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징역 9년 ~ 13년으로 설정함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양형기준 시행 성과 분석 결과 특수강도강제추행의 평균형량이 8년 정도로 나타남. 성폭범상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나, 양 죄가 죄질까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평균형량 분석결과 역시 특수강도강제추행이 다소 약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형량범위를 약간 상향하되 특수강도강간에 적용될 수정 양형기준안을 참작하여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을 징역 7년 ~ 11년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경영역 및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함

(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형기준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13년 이상, 무기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13년 이상, 무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영역 하한을 일부 상향시킴

(2) 양형인자

(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할지 여부

- 개정 형법(2013. 6. 19. 시행 예정)상 친고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재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할지 여부가 문제됨
-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의견	내용
현행 유지 (함석천, 최승원, 최진녕, 범현, 이주원, 이진국, 김혜정, 이종교)	○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해야 함 ○ ‘처벌불원’의 인자를 두어 합의나 금전적 배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수단으로 삼아야 함 ○ 오히려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처벌불원’이라는 인자라도 남겨서 감경의 여지를 두어야 함 ○ 특히, 성폭법 위반, 아청법 위반 범죄 등은 이전부터 친고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위 범죄들에 관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음
삭제 (주용완, 조석영)	○ ‘처벌불원’의 의미가 애매하므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

II. 제6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3. 18.(월) 16:00 ~ 19: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김혜정, 범현,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4. 회의 요지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논의 결과

(1)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량범위 수정에 관하여 제2 내지 제5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방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제1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견해가 나뉨
- 다수의견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소수의견은 지난 번 회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도 형량범위를 일부 상향하자는 의견이었음

(a) 다수의견(범현, 최진녕, 김혜정, 이수정, 이주원, 이종교, 강우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b) 소수의견(함석천, 최승원, 주용완, 조석영)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2) ‘유형의 정의’ 부분

(가) 제1유형

- 지난 번 회의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제1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의 예시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

- 비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
 -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3) 양형인자

(가) ‘중한 상해’의 수정

- 위 인자의 정의 중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논의 결과

(1) 성범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가) 관련 법률 개정 내용

(a) 형법 (2013. 6. 19. 시행 예정)

-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신설(법 제297조의2) 및 관련 조문 정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면서 관련 조문 정비(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 성폭력 범죄 객체 변경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제297조, 제

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 친고죄 규정 삭제

-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제306조 삭제)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6. 19. 시행 예정)

○ 친족 범위 변경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성폭력 범죄 객체 변경

-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3. 6. 19. 시행 예정)

○ 성폭력 범죄 객체 변경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강간 / 준강간, 위계·위력 간음 : 5년 이상 → 무기, 5년 이상
-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위계·위력 유사강간 : 3년 이상 → 5년 이상
- 강제추행, 위계·위력 강제추행 : 1년 이상 → 2년 이상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치사 규정 신설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7년 이상
- 강간 등 치사 : 사형, 무기, 10년 이상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조항 변경

- 개정 전 법 제11조의2 → 개정 후 법 제8조

○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 조항 변경

- 개정 전 법 제12조의2 → 개정 후 법 제18조

○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 강요

- 개정 전 법 제17조 → 개정 후 법 제16조

(나) 수정 방안

- 일반적 기준 중 ‘장간죄(13세 이상 대상)’

-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6년 - 10년 5년 - 8년	9년 - 13년 7년 - 10년	12년 - 17년 9년 - 13년

-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형법에 신설된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함시키되 법정형(2년 이상)을 고려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기로 함
- 법정형이 상향된 아청법상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함

-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를 2/3로 감경
- 형법에 신설된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함시키되

법정형(2년 이상)을 고려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기로 함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신설된 성년 유사강간, 법정형이 변경된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 등에 있어서 권고 형량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나뉨
 - 현행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다수의견
 - 상해가 발생한 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물론이고 기본범죄의 내용과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시키자는 의견
- 소수의견
 - 상해가 발생한 범죄 자체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성년 유사강간은 3유형에,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은 4유형에 각 포섭시키자는 의견

(2) 양형인자

(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할지 여부

- 현행과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로 수정할지 여부

- 현행과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유지하되,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여 별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의견 일치

(다)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의 삭제 여부

- 지난 제4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서 위 인자를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

I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67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